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32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규 조성에 따라 구립 체육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립 체육시설 항목 신설(안 별표 1)
- 나. 개인사용료의 범위 신설(안 별표 2)
- 다. 전용사용료의 범위 신설(안 별표 3)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 2)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3)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1. 10. 15. ~ 11. 4.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11.9.)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망원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성미산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테니스장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 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 성 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 만18세 어린이 만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 불링화 대여 : 1,000원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 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 1면 2시간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다목적 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
 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
 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p>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p> <p>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p> <p>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명칭			
<생략>				<현행과 같음>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신설>			소프트테니스장		
		인라인트랙, 조깅 트랙, 자전거트랙			인라인트랙, 조깅 트랙, 자전거트랙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생략>				<생략>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 1면 2시간			
		<신설>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지 소프트 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 1면 2시간			
		<신설>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생략>				<생략>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신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시설 신설에 따른 사용료
- 관련 조문: 조례 제8조(사용료 등) 및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시 예상되는 총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관광일자리국 생활체육과 이성민 (☎ 3153-9874)